

※임시총회 및 서면 결의서 작성 등 안내

서면 결의서 제출 방법

- 서면 결의서를 작성하여 [2021.09.21.(화) ~ 9.27.(월) 18:00]에 사무국에 도착할 수 있도록 우편으로 보내주시거나, 이미지 파일을 이메일, 팩스, 문자 등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.

*주 소: (38103)경주시 북천길31. 3층 경주환경운동연합

*팩 스: 054-746-5006

*이메일: kyongju@kfem.or.kr

*문 자: 010-4660-1409(사무국장)

- 임시총회 및 서면 결의서 관련 문의: 010-4660-1409

임시 총회 개최 이유

- 경주환경운동연합을 ‘공익단체’로 등록하기 위해 정관 개정이 꼭 필요합니다. 기획재정부에 공익단체로 등록해야 회원님이 납부하신 회비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.
- 그동안 환경운동연합(중앙)에서 전국의 모든 회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습니다. 그러나 환경운동연합(중앙)이 여러 사정으로 ‘공익단체’를 해산하고 사단법인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.
- 이제 경주환경운동연합이 독립적으로 ‘공익단체’로 등록하여 회원님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려야 합니다. 이에 정관 개정을 위해 임시총회를 서면 결의서 제출 형태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. 연말정산 혜택은 종전과 변함이 없습니다.

정관 개정(안) 해설

<안건1> 공익단체 등록을 위한 정관 개정

① 환경운동연합(중앙) 법적지위 변경

- ▶ 환경운동연합(중앙)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‘지정기부금단체’로 기부금을 모집했으나, 올해 1월 1일부로 지정기부금단체에서 해제되었습니다.
⇒ 환경운동연합(중앙)은 ‘비영리민간단체’로 엄밀하게 보면 법인이 아닙니다. 지정기부금단체는 비영리법인만 해당이 되므로 지정기부금단체에서 해제되었습니다.
- ▶ 이에 환경운동연합(중앙)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며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는 ‘기부금대상민간단체’로 등록을 했습니다. 그러나 기부금대상민간단체(現 공익단체)는 기부금을 납부한 ‘법인’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.
- ▶ 환경운동연합(중앙)은 2021.9.11.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공익단체(前 기부금대상민간단체) 해산을 결정했습니다. 이에 따라 환경운동연합(중앙)은 2022.1.1.부터 사단법인 환경운동연합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.

<참고>

- 지정기부금단체: 비영리법인이 기부금을 모집하고자 할 때 국세청의 추천을 받아 등록
- 공익단체(前 기부금대상민간단체): 비영리민간단체가 기부금을 모집하고자 할 때 행정안전부의 추천을 받아 등록

② 경주환경운동연합 법적지위 변경 필요성

- ▶ 그동안 경주환경운동연합의 회원 및 기부금(회비)의 전산관리, 기부금 영수증 발행 등을 환경운동연합(중앙)에서 담당했습니다.
- ▶ 그러나 환경운동연합(중앙)이 공익단체 해산을 결정하고, 2022.1.1.부터 사단법인 환경운동연합으로 전환함에 따라 회원 및 기부금(회비)의 전산관리, 기부금 영수증 발행 등을 경주환경운동연합이 독립적으로 해

야 합니다.

- ▶ 이를 위해 경주환경운동연합은 기획재정부에 ‘공익단체’ 등록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. 이에 공익법인 요건에 맞는 정관 개정이 필요합니다.

③ 경주환경운동연합, 비영리민간단체 지위 유지 결정

- ▶ 경주환경운동연합은 환경운동연합(중앙)의 사단법인 전환에 대비하여 203차 집행위원회(2021.4.7.)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했습니다. 논의 결과 사단법인으로 전환하지 않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위를 유지하고 공익단체 등록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.
- ▶ 비영리민간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공익단체로 등록할 경우, 개인 후원은 받을 수 있으나 법인(기업) 후원은 사실상 받을 수 없습니다(받을 수 있으나, 법인에게서는 증빙서류를 발급 못함). 법인(기업)의 후원을 받을 수 없는 만큼 시민들의 자발적인 후원이 더욱 중요합니다. 회원님의 변함없는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
④ 정관 개정(안)

- ▶ 정관 개정의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(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) 제1항 제5호입니다. 이에 기초하여 정관을 신설합니다.

개정사유	개정(신설)
소득세법 시행령 제1항 제5호	제3장 조직 제20조 (해산 및 잔여재산의 귀속) ① 이 모임의 해산은 회원 총회에서 재적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회원 2/3 찬성으로 결의하고,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 ②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. 제4장 재정 제24조 (재정공개)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

	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.
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<안건2> 명칭의 영문표기 변경을 위한 정관 개정

- 경주환경운동연합 영문 표기가 올바르지 않아 변경 하고자 합니다.
 - ▶ 영문 표기에서 전치사 ‘for’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아서 ‘of’로 변경
 - ▶ 영문 표기에서 ‘Kyong Ju’가 표준 표기법을 따르고 있지 않아서 ‘Gyeongju’로 변경 등

개정사유	개정(변경)
영문 표기 바로 잡음	<p>(현행) 제1장 총칙 제1조 (명칭) 이 모임은 “경주환경운동연합”(약칭‘경주환경연합’)이라 한다. 영문명은 “Kor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 Kyong Ju” (약칭‘KFEM Kyong Ju’)라 한다.</p> <p>(변경) 제1조 (명칭) 이 모임은 “경주환경운동연합”(약칭‘경주환경연합’)이라 한다. 영문명은 “Korean Federation of Environmental Movement - Gyeongju” (약칭 Gyeongju KFEM)라 한다.</p>